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0
----------	-----

2022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허 훈 의원 (찬성자 24명)
- 나. 제안일 : 2022년 10월 17일
- 다. 회부일 : 2022년 10월 21일
- 라. 상정일 :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29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허 훈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을 행사하므로 결과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서울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제18조 내지 제19조의5)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시정권고 및 후속 조치, 구제위원회 지원
-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제20조 내지 제21조)
  - 설치 및 기능, 조사수행, 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2.10.27. ~ 10.31.) 결과

-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모두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임.

입 법 예 고 결 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이○○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은 명백한 인권제도의 후퇴입니다. 사회적 합의없는 인권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인권보호관은 애초부터 독립적인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인권보호관의 권한 약화와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전○○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인권제도의 후퇴입니다. 실제 심의와 결정을 하는 위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심의하는 위원이 보고만 받고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조사를 보장하고, 인권보호관 등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여러 명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사건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인권보호관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일반직에 의한 조사를 하도록 한다면 기존 감사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도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좀 하고 조례안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p>수령이 필요함이 역설되었고,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중론이 있어 폐기되었던 내용인데, 사회적 합의과정없이 다시 폐기되었던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히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p>
<p>최○○</p>	<p>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 이유’는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인데, 그간 상임인권보호관들이 구제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의결의 객관성이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통상적으로 각 사건 조사를 한 명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전담하는바, 하나의 사건을 의결할 때 다수결로 가는 경우 조사와 의결이 중첩되는 인권보호관은 그 한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의원들이 우려하는, 조사와 의결의 중첩으로 인하여 발생할 객관성 훼손의 가능성은 매우 작다. 그리고 사건 의결을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하는 경우 자체가 극소수이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참고사항’은 결정을 하는 위원회와 조사를 하는 사무국을 분리시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들이 조사와 관련하여 사무국과 매우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한다.</p> <p>그리고 상임인권보호관들이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손보다는 득이 될 소지가 크다. 우선, 사건을 조사한 그들이 비상임인권보호관들보다 사건의 진상에 대해 더 많이 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현재 구제위원회를 매달 셋째 주로 정해 놓고 개최하고 있는데, 만약 상임인권보호관들을 의결에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회의 성원 자체가 되기 어려워 날짜를 정해 놓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p> <p>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8조 제3항을 삭제하고 신설한 제20조 제1항에서 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관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것은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은 서울시와 서울시 유관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이므로 철저한 조사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순환 보직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사건 관계인들과 인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엮힐 소지가 크기에 그들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에 임할 때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적지 않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그러한 우려가 적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이 적절하다.</p>
<p>김○○</p>	<p>조사를 맡은 인권보호관의 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참여를 배제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조사를 맡은 인권보호관이 다른 위원에 비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구제위원회는 조사를 맡은 인권보호관 이외에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인권보호관의 의견이 맞지 않다면 다수결로 인권보호관의 입장은 채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맡은 인권보호관의 참여를 배제해서 얻는 이익 보다는 인권보호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놓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려면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인권보호관들이 침해구제위원회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권보호관을 임기제가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인권침해사건의 대부분은 직위나 권한이 적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데 만약 인권보호관이 지방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내부 보고체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므로 결국 인권침해사건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상실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보호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p>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인권정책회의 연 1회 개최 조항(제7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현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분리하기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8조), 구성(안 제19조) 등을 개정하고,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및 기능(안 제20조 신설), 조사수행(안 제20조의2 신설)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조례개정 전후 비교 〉

구 분		현 행	개 선
① 상임보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보호관(임기제공무원)</li> <li>▶ 조사+의결</li> <li>▶ 직권조사</li> <li>▶ 각하사건 예외적 조사</li> <li>▶ 임시회 소집권</li> <li>▶ 외부 조사전문가 선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보호관(일반직공무원)</li> <li>▶ 조사</li> <li>▶ 외부 조사전문가 선임</li> </ul>
② 구 제 위 원 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보호관(임기제공무원)</li> <li>▶ 비상임보호관(외부위원)</li> </ul>	▶ 외부위원
	기능	▶ 조사 + 의결, 시정권고	▶ 의결, 시정권고
	보궐위원 임기	-	▶ 새로 시작
	위원장 대행	-	▶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

- 이는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함)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고 함)를 분리하여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집중하고, 구제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여 서울시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구제위원회에서 인권보호관을 분리함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구제위원회의 조사와 권고의 연계성 약화 우려, 인권보호관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된다는 입법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현재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설치(안 제12조)”하도록 규정한 「인권정책 기본법안」(의안번호 14195, 정부 발의, 2021.12.30.)이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므로, 국회 입법과정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나. 세부내용 검토

### 1) 인권정책회의의 연 1회 개최규정 삭제(안 제7조의2제4항 삭제)

- 안 제7조의2제4항 삭제는 인권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생략)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함)는 시장이 주관하여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연 1회 개최와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정책회의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권담당관은 2017년 기본계획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시행사항은 실적점검 등 실무적 사항으로 시장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어려운 현실적 애로가 있고, 올해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12월 중 인권정책회의 개최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 인권정책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2017년 ~ 2022년 10월 현재) 〉

연도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개최결과
2017	9.26. 16:00~17:10	시청 간담회장	총 18명 시장, 정무부시장, 인권위원장/ 부위원장, 인권위원 3명, 서울 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문화본부장, 평생 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안전 총괄본부장, 주택건축국장, 인권 담당관	○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 실·본부·국의 주요사업 추진 계획 보고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 권위원회 의견 제시 및 토론	관련 실본부국에 회의내용 공유 및 제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또한, 정책회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그 개최시기를 연 1회가 아닌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되기 전에 개최하도록 하는 등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회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전에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 2)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정

- 동 개정 조례안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기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하고(안 제18조),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개정(안 제19조), 위원장 직무 등(안 제19조의2 신설), 위원회의 운영(안 제19조의3 신설), 시정 권고 및 후속조치(안 제19조의4 신설), 구제위원회 지원(안 제19조의5 신설)을 규정하고 있음.

### 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기 위하여, 상임인권보호관을 구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제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제목을 ‘설치 및 구성’에서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u>제18조(설치 및 구성)</u>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p>	<p><u>제18조(설치 및 기능)</u> ① ----- ----- 침해의 구제를 ----- ----- --.</p> <p>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 권고에 대한 사항</li> <li>2.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lt;삭 제&gt;</p>

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 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 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이는 종전의 구제위원회 구성에서 상임 인권보호관을 분리하여, 구제위원회 인권침해 심의·의결에서 조사에 참여하였던 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선입견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누구든 자기가 조사한 사항을 뒤집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구제위원회 구성에서 상임 인권보호관을 분리 규정하는 것은, 현재 구제위원회 심의·의결시 조사에 참여한 상임 인권보호관이 참여함에 따라 의결 결과에 영향에 미치는 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상임 인권보호관 분리로 구제위원회가 옥상옥화될 우려는 없는지 등 상임 인권보호관의 구제위원회 구성 분리 여부에 관하여는 시민침해인권구제위원회 성격 등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구제위원회 위원이 모두 비상임 외부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이해, 업무의 집중성,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현황(2016년~2022년 10월)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0
3회	15회	14회	19회	17회	18회	13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 안건 현황(2016년~2022년 10월)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0
11건	112건	116건	131건	146건	145건	100건

〈 최근 3년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주요활동 현황 〉

(2022. 9. 30. 기준, 병합포함)

구분	사건 접수 (건)	처리 현황(건)					
		권고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해결	조사중지
총계	352	80 (병합8건 포함)	57 (병합4건 포함)	134 (병합9건 포함)	60 (병합1건 포함)	12	9

구분	사건 접수 (건)	처리 현황(건)					
		권고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해결	조사중지
'22년	82	19 (병합2건 포함)	12	32 (병합2건 포함)	15 (병합1건 포함)	1	3
'21년	132	25 (병합1건 포함)	26	53 (병합6건 포함)	17	6	5
'20년	138	36 (병합5건 포함)	19 (병합4건 포함)	49 (병합1건 포함)	28	5	1

※ 감사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3면 재인용.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현황 >

(기준일 : 2022.10.21.)

연번	성명	성별	현 직	주요경력	비고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위촉직)					
1	이○○ (위원장)	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li> <li>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li> <li>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li> </ul> (위촉기간:2022.10.21. ~ 2024.10.20.)	법조계
2	김○○	여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li> <li>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li> </ul> (위촉기간:2020.11.20. ~2024.11.19.,연임)	학계
3	손○○	여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위원</li> <li>제3기 「(국가)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분과위원회 위원</li> </ul> (위촉기간:2020.11.20. ~ 2022.11.19.)	시민단체
4	이○○	남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의정부·광주·제주 지검 부장검사</li> <li>법무부 인권정책과장</li> </ul> (위촉기간:2021.7.16. ~ 2023.7.15.)	법조계
5	김○○	남	이주민법률지원센터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li> <li>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li> </ul> (위촉기간:2022.1.21. ~ 2024.1.20.)	시민단체
6	임○○	여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고법 고법판사</li> <li>대법원 재판연구원(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서울중앙지법 판사</li> </ul> (위촉기간:2022.10.21. ~ 2024.10.20.)	법조계

연번	성명	성별	현 직	주요경력	비고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임명직)					
7	노○○	남	공무원 (임기제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li> <li>▸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임용일 : 2018.11.26.)</li> </ul>	위원회 조사관
8	이○○	여	공무원 (임기제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li> <li>▸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팀장 (임용일 : 2022.7.1.)</li> </ul>	시민단체

○ 다음으로, 안 제18조제2항은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사항을 살펴보면, “1.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2.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기존에 상임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20조제1항단서)도 동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지게 되는 것임.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어도 사실을 드러내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음에도 신청된 사건만 조사함으로써 구제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여지는  
없는지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상임 인권보호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독으로 결정하여 직권 조사하는 결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조사의 절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청되지 않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건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18조제2항제3호는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되어 있고, 법령문도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두도록 하고 있는바, 문구 수정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u>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u>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

## ② 위원회의 구성(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구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	제19조(구성)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다만, 종전의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제18조제2항) 하였으나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하고 있음.

- 이는 기존 비상임 위원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구성을 변경(기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비상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정수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시행일을 충분히 유예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종전의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제19조제1항)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기가 변경되었는바,
  - 부칙에 변경된 임기를 현재 위원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와 현재 위원에게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의 기산일을 위촉된 날로 할지, 시행일로 할지를 결정하여 적용례를 규정해야 하고, 변경된 임기를 현재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더욱이, 위원 연임제한 규정(안 제19조제2항)을 신설하였는바 현재 위원에 대해 연임 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1.12, 680면 참조.

**[입법례] 임기 및 연임제한 신설 시 위원 임기의 기산일을 따로 설정하고 그 임기부터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한 사례**

**국가배상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7581호, 2016. 11. 15.)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③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안 제19조의2 ~ 안 19조의4 신설)

- 안 제19조의2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범위와 위원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sup>1)</sup>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9조의3은 구제위원회의 운영은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1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9조의4는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종전에는 인권침해 결정의 경우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제23조제1항)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고, 위원회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안 제19조의3제2항)하고 있음.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제1항).

1)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6., 212-213면 참조.

- 이는 인권침해 결정은 신중한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19조의3제2항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3명이 찬성해도 인권침해 결정이 가능한바,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확보, 중대성을 감안해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b>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b>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lt;신설&gt;</p>	<p><b>제19조의3(운영)</b> ① 구제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lt;신설&gt; &lt;중전 제23조 이동·수정&gt;</p>	<p><b>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b>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p>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 3)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신설)

- 동 개정 조례안은 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 분리에 따라 제5장 시민인권 보호관을 신설하여, 인권보호관의 설치 및 기능(안 제20조), 조사수행(안 제20조의2), 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안 제21조)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관의 기능 및 조사수행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① 인권보호관의 설치 및 기능(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종전의 구제위원회에서 인권보호관을 분리하기 위하여, 인권 보호관의 역할을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한다고 하고,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종전에는 상임 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었으나(제18조 제3항) 동 개정 조례안 제20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있어 인권 보호관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인권보호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유관기관(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바, 철저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나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 인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엮힐 소지, 내부 보고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입법 예고시 반대 의견이 있었던 바, 이를 감안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권보호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필수보직기간도 2년이고, 전문직위도 3년이면 전보 가능함에 따라 조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권보호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안 제20조제3항에서 인권보호관의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라고 하고 있고,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직권 조사 기능을 삭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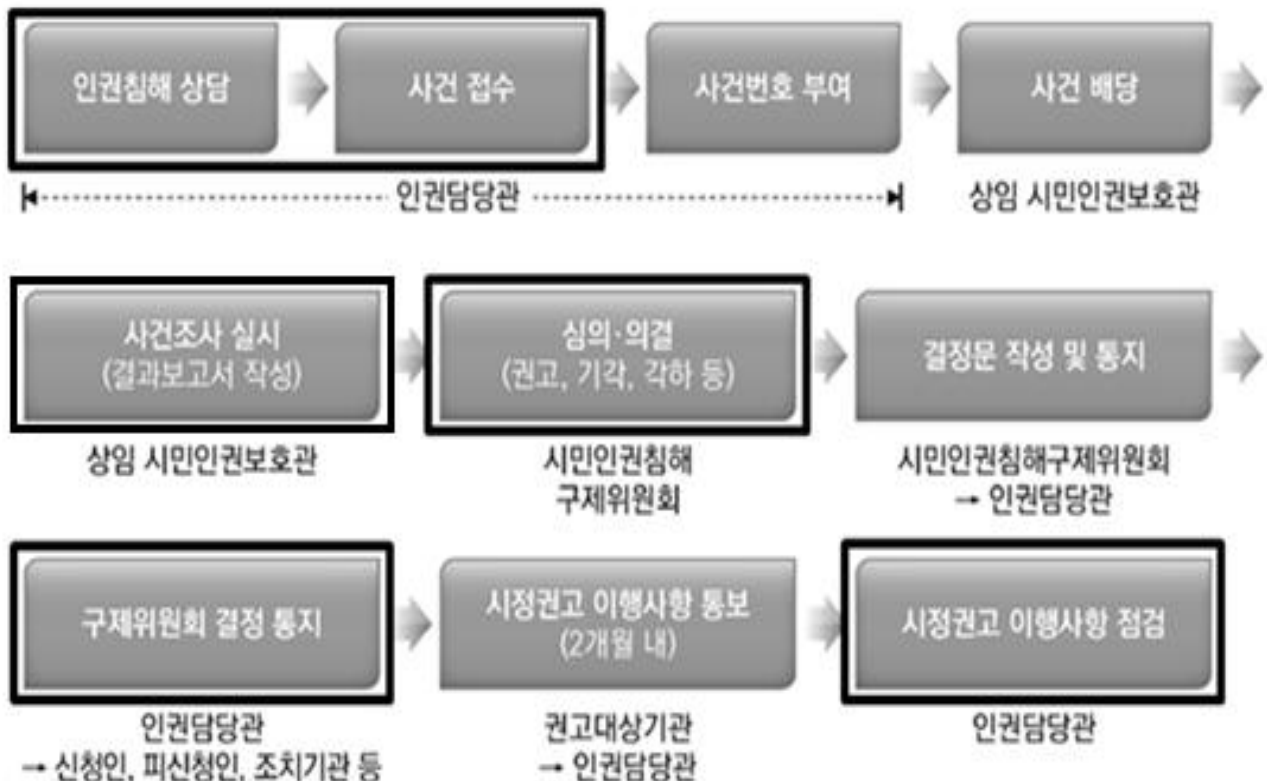
-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동 개정 조례안 부칙 안 제2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인권보호관”에서 “감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일년에 50건 정도를 조사해 결정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 〉



## 〈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현황 〉

(2022.9.30. /사건 결정일 기준)

연 도	결정건수	결 과					
		기각	취하	각하	권고	조사 중지	조사중 해결
총 계	168 (병합15건포함)	72 (병합7건포함)	34	31 (병합4건포함)	22 (병합4건포함)	6	3
2022.9월	52 (병합5건포함)	27 (병합3건포함)	8	5	10 (병합2건포함)	1	1
2021	58 (병합5건포함)	23 (병합4건포함)	9	13	8 (병합1건포함)	4	1
2020	58 (병합5건포함)	22	17	13 (병합4건포함)	4 (병합1건포함)	1	1

## 〈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권고 및 조치현황 〉

연번	사건명(결정일)	판단결과	조치현황
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0신청-10(20202.21.)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인사조치, 노동인권교육</li> <li>▸ 피해자 피해 회복조치, 피신청인과 동일공간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li> <li>▸ 전체 임원 및 간부 인권교육,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li> </ul>
2	직장 내 괴롭힘 20신청-67(2020.7.17.)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인사조치 및 인권교육, 피해자 원에의거 별도 피해조치 미실시</li> <li>▸ 4급이상 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계획수립, 교육컨텐츠개발 등</li> </ul>
3	시립시설 직장 내 괴롭힘 20신청-17,20(2020.8.21.)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징계처분, 노동인식개선 특별교육</li> <li>▸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및 향후 피신청인과 접촉하는 일 없도록 조치</li> <li>▸ 관련 매뉴얼 점검 및 시스템 마련, 타 관련 시설 점검(추진중)</li> </ul>
4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1신청-2(2021.4.16.)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교육</li> <li>▸ 신고인 의사고려 피해회복 조치</li> </ul>
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21신청-37(2021.8.20.)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중: 피신청인 노동인권교육,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및 2차 피해예방 조치, 재발방지 조직문화 점검, 전체 교육 조치</li> </ul>
6	직장 내 괴롭힘 21신청-51(2021.8.20.)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및 2차 피해예방 조치, 피신청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피신청인 인사조치 및 노동인권교육</li> </ul>
7	직장 내 괴롭힘 21신청-53,72(병합) (2021.8.20.)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노동인권교육</li> </ul>
8	직장 내 괴롭힘 21신청-77(2021.8.20.)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인사조치, 피신청인이 피해자와 동일부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li> <li>▸ 추진중: 피신청인 노동인권교육, 피해자 피해회복조치 및 2차 피해예방 조치,</li> </ul>
9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21신청-98(2021.11.19)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인권교육, 후원금 반납</li> </ul>

연번	사건명(결정일)	판단결과	조치현황
10	직장 내 괴롭힘 21신청-81(2021.11.19)	권고	· 피신청인 인사조치, 노동인권교육,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피신청인과 피해자가 동일부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11	사업소 직장내 괴롭힘 21신청-130(2022.1.21.)	권고	· 피신청인 인사조치, 노동인권교육,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피신청인과 피해자 공간분리조치유지, ○○참여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2	사업소 직장내 괴롭힘 21신청-144(2022.1.21.)	권고	· 피신청인 인사조치, 노동인권교육,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피신청인과 피해자 동일부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13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21신청-115(2022.3.18)	권고	· 피신청인 노동인권교육,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14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21신청-127(2022.3.18)	권고	· 피신청인 인사조치, 노동인권교육,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피신청인과 피해자 공간분리조치유지, 구성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5	투자출연기관 상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 21신청-60,63,65(병합) (2022.4.15)	권고	· 피신청인 인권교육
16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2의뢰-1 (2022.5.20)	권고	· 피신청인 개인정보보호교육
17	직장 내 괴롭힘 22신청-15(2022.8.19)	권고	· 피신청인 노동인권특별교육, 피해자 피해회복 및 2차 피해예방 · 추진중:이행시기 미도래
18	직장 내 괴롭힘 22신청-43(2022.9.16)	권고	· 피신청인 노동인권교육 · 추진중:이행시기 미도래

- 현재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결정하여 인사조치 권고 수반시에는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하여 징계·의결 함으로써 중복조사 및 구제의 신속성 저해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관을 인권담당관의 인권조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의 변경은 중복조사 해결 및 구제의 신속성은 있을 것임.
-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인권침해 사항을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권고의 필요성도 인정되는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담당기관 변경에 관하여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개정안 제20조제3항에서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직권 조사 기능을 삭제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위원회 심의·의결 규정(안 제18조제2항)에서도 인권침해 직권조사 심의·의결이 없는데,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어도 사실을 드러내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제315회 정례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12조)을 위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6,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이 회부(기획경제위원회 소관)되었는데, 동 개정 조례안의 처리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296,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2022년 10월 17일)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직무) <신 설>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

<신 설>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 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보호관”)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용 및 지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인권보호관은 -----  
-----  
-----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 <단서 삭제>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인권보호관은 제3항 -----  
----- 조사하지 아니한다. ----- 구제위원회가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 그리고, 안 제20조제4항은 인권조사관이 조사하지 않는 사건을 열거하고 있으나 제4호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처럼 “구제위원회의 직무 범위”라고 하는 있는바, 문구 수정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b>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략)</b></p> <p>④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u>구제위원회</u>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5. ~ 7. (현행과 같음)</p>	<p><b>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략)</b></p> <p>④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신청의 내용이 제3항에 규정된 <u>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u>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5. ~ 7. (현행과 같음)</p>

**② 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안 제21조)**

- 안 제21조는 구제위원회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배우자 등 특정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경우 조사·결정에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나 인권보호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거나 조사한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제위원회 의결 및 인권조사관의 조사 결과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19조제4항에서 구제위원회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b>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b> <u>시민인권보호관</u>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호관</u>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li> <li>2. <u>보호관</u>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 <li>3. <u>보호관</u>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li> <li>4. <u>보호관</u>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li> <li>5. <u>보호관</u>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li> </ol>	<p><b>제21조(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b> <u>위원 및 인권보호관</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 및 인권보호관</u>-----        -----</li> <li>2. <u>위원 및 인권보호관</u>-----        -----</li> <li>3. <u>위원 및 인권보호관</u>-----        -----</li> <li>4. <u>위원 및 인권보호관</u>-----        -----        ---</li> <li>5. <u>위원 및 인권보호관</u>-----        -----        -----</li> </ol>

#### 4)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적용 필요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종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면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는바,<sup>2)</sup> 동 조례안의 ‘호선’과 ‘개의’는 한자와 함께 쓰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2021.12., 34면 참조.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9조(구성) ① ----- -----, -----호선---. ② ~ ④ (생 략) 제19조의3(운영) ① (생 략) ② ----- ----- 개의---, -----	제19조(구성) ① ----- -----, -----호선(互選)---. ② ~ ④ (생 략) 제19조의3(운영) ① (생 략) ② ----- ----- 개의(開議)---,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수정안의요지

### 가. 수정이유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 조사를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 조사를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신설(안 제18조제2항제2호 신설).
- 인권침해 결정시 신중한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신설).

-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안 제20조제2항).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권보호관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단서신설).
- 현재 비상임 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안 제2조 신설).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0
----------	-----------

제안연월일 : 2022년 12월 16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 조사를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 조사를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신설(안 제18조제2항제2호 신설).
- 인권침해 결정시 신중한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신설).
-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안 제20조제2항).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권보호관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단서신설).
- 현재 비상임 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안 제2조 신설).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안 제18조제2항제2호는 제3호, 제3호는 제4호로 하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를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로 한다.

안 제19조제1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안 제19조의3제2항 중 “개의”는 “개의(開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20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용 및 지위에 관하여는”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따른다.”는 “따라 임용한다.”로 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4항제4호 중 “제1항에”를 “제3항에”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를 “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로”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생략)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생략)</p>	<p>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lt;삭제&gt;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lt;신설&gt; 2.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p>	<p>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③ <u>상임 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지방 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u></p> <p>④ <u>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u></p> <p>1.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u></p> <p>2. <u>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u></p> <p>3. <u>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u></p>	<p>3. 그 밖에 <u>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u>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4. 그 밖에 <u>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u>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u>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u></p> <p>⑤ <u>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⑥ <u>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u></p> <p>⑦ <u>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u>제19조(구성)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u></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u>제19조(구성)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p> <p>(이하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u>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u></p> <p>③ <u>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u></p> <p>④ <u>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위촉한다.</u></p> <p>1.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u></p> <p>2. <u>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u></p> <p>3. <u>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u></p> <p>4. <u>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u></p> <p>③ <u>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u></p> <p>④ <u>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lt;신 설&gt;</p>	<p><b>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b>            ① 위원장은 <u>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b>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p>
<p>&lt;신 설&gt;</p>	<p><b>제19조의3(운영)</b>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b>개의</b>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b>의결한다.</b></p>	<p><b>제19조의3(운영)</b>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b>개의(開議)</b>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b>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p>
<p>&lt;신 설&gt;  <b>제20조(직무) &lt;신 설&gt;</b></p>	<p><b>제5장 시민인권보호관</b>  <b>제20조(설치 및 기능)</b>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p>	<p><b>제20조(설치 및 기능)</b>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data-bbox="199 488 343 521">&lt;신설&gt;</p> <p data-bbox="199 770 571 1473">① <u>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p> <p data-bbox="199 1503 443 1536">1. ~ 5. (생략)</p> <p data-bbox="199 1568 571 1823">② <u>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u></p> <p data-bbox="199 1854 571 2000">③ <u>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p>	<p data-bbox="624 309 1002 454"><u>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둔다.</u></p> <p data-bbox="624 486 1002 741">② <u>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용 및 지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u></p> <p data-bbox="624 772 1002 1196">③ <u>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u></p> <p data-bbox="624 1211 820 1245">&lt;단서 삭제&gt;</p> <p data-bbox="624 1503 943 1536">1. ~ 5. (현행과 같음)</p> <p data-bbox="624 1568 762 1601">&lt;삭제&gt;</p> <p data-bbox="624 1854 1002 2000">④ <u>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p data-bbox="1054 486 1436 685">② <u>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u></p> <p data-bbox="1054 772 1436 1476">③ <u>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u></p> <p data-bbox="1054 1503 1251 1536">(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54 1568 1283 1601">(개정안과 같음)</p> <p data-bbox="1054 1854 1283 1888">(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u>각하한다</u>.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u>상임 보호관이</u>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5. ~ 7. (생략)</p> <p>④ <u>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u></p>	<p>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u>조사하지 아니한다</u>.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u>구제위원회가</u>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신청의 내용이 <u>제1항에</u> 규정된 <u>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u>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5. ~ 7.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신청의 내용이 <u>제3항에</u> 규정된 <u>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u>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5. ~ 7.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p> <p>① <u>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u>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 전단 중 “<u>「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u>”를 “<u>감사위원회에</u>”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u>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u>”을 “<u>권한</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u>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u></p> <p>② <u>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p>	<p>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를 “감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설치 및 구성)”을“(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진을”을 “침해의 구제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구성)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3(운영)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을 삽입한다.

제20조의 제목 “(직무)”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둔다.
- ②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제위원회는”을 “인권보호관은”으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제위원회는 제1항”을 “인권보호관은 제3항”으로, “각한다”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임 보호관이”를 “구제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4호 중 “제1항에”를 “제3항에”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를 “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사수행) ①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보호관의 제척 등)”을“(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인권보호관”을 “위원 및 인권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보호관”을 각각 “위원 및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중전의 제22조, 제23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 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 보호관에게”를 “감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생략)</p> <p>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li> <li>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li> <li>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p> <p>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p> <p>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p> <p>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lt;삭 제&gt;</p>
<p>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p>	<p>&lt;삭 제&gt;</p>
<p>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b>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b>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b>제19조(구성)</b>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p>

현 행	개 정 안
<p>② <u>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u></p> <p>③ <u>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u></p> <p>④ <u>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u></li> <li>2. <u>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u></li> <li>3. <u>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u></li> <li>4. <u>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u></li> </ol> <p>③ <u>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u></p> <p>④ <u>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b>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b> ① <u>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b>제19조의3(운영)</b> ① <u>구제위원회는 월 1회</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0조(직무) &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① <u>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p> <p>1. ~ 5. (생략)</p> <p>② <u>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u></p> <p>③ <u>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u>각하</u>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u>상임 보</u></u></p>	<p>② <u>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시민인권보호관</u></p> <p><u>제20조(설치 및 기능) ①</u> <u>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둔다.</u></p> <p>② <u>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u></p> <p>③ <u>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④ <u>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u>조사</u>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u>호관이</u>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u>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u>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5. ~ 7. (생략)</p> <p>④ <u>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u></p> <p>&lt;신설&gt;</p>	<p><u>구제위원회가</u>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신청의 내용이 제3항에 규정된 <u>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u> 해당하지 않는 경우</p> <p>5. ~ 7.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b>제20조의2(조사수행)</b> ① <u>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u></p> <p>③ <u>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u>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u></p>
<p><b>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b> <u>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u></p> <p>1. <u>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u></p>	<p><b>제21조(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b> <u>위원 및 인권보호관</u> ----- ----- -----.</p> <p>1. <u>위원 및 인권보호관</u>----- ----- -----</p>

현 행	개 정 안
<p>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u>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u></p> <p>4. <u>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p> <p>5. <u>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u></p>	<p>-----</p> <p>2. <u>위원 및 인권보호관</u>-----</p> <p>-----</p> <p>3. <u>위원 및 인권보호관</u>-----</p> <p>-----</p> <p>4. <u>위원 및 인권보호관</u>-----</p> <p>-----</p> <p>5. <u>위원 및 인권보호관</u>-----</p> <p>-----</p>
<p><b>제22조(조사수행)</b>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u>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u></p> <p>③ <u>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u>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b>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b> ① <u>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② <u>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u>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u>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⑤ <u>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24조 (생략)</p>	<p>제24조 (현행 제24조와 같음)</p>
<p>제25조(구제위원회 지원) ① <u>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들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lt;삭제&gt;</p>
<p>제26조 (생략)</p>	<p>제26조 (현행 제26조와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p>

현행	개정안
	<p>시행한다.</p> <p><b>제2조(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b>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p> <p>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p> <p><b>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b>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를 “감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p>